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
- (바)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경사면 및 흙막이 상부 주변에 적치해서는 아 니 된다.
- (사) 표면수가 지층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배면에 배수로, 비닐막 설치 또는 배면지반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(3) 콘크리트 및 가설구조물 무너짐 재해예방

- (가) 동결되었다가 해빙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구 조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(나) 지반 침하로 지반에 설치된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구조물의 무너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다)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작업 전 펌프카 설치 장소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, 다짐이 되지 않은 흐트러진 상태의 지반, 연약 지반 및 굴착배면 근접 구간일 경우 펌프카의 위치를 재설정한다. 또한, 아웃트리거가 침하되지 않도록 바닥의 적정 다짐도 확보 및 작업 중 훼손되지 않는 충분한 강도의 깔판. 깔목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라) 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과 거푸집 및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KOSHA GUIDE C-43-2012(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) 및 C-51-2015(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보건작업 지침)의 규정에 따른다.

## 5.2.2 장마철

## (1)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 조치사항

(가) 현장이 속해 있는 지역의 과거년도 침수 발생 여부, 강우량 등 기상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, 이를 토대로 배수계획 등 현장에 적합한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